
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한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29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10.

발 의 자 : 김한규 · 이언주 · 김성범
문대림 · 문진석 · 서미화
장철민 · 한준호 · 박정현
양부남 · 맹성규 · 전현희
김태년 · 김동아 · 박상혁
이용우 · 김원이 · 이주희
백승아 · 복기왕 · 박민규
임미애 의원(2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

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유형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음. 이에 해당하는 범죄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어 그에 따른 긴급임시조치, 임시조치, 피해자보호명령 및 보호처분 등 피해자 보호절차를 적용받음.

그러나 피해자가 노인인 경우 「노인복지법」상의 형벌규정을 적용받는다면 가정폭력범죄로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하급심(부산가정법원 2022. 6. 27.자 2021서58 결정)과 대법원(대법원 2023. 2. 2.자 2022어48 결정)의 상반된 해석으로 법 집행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한 바 있음.

이에 법해석상의 혼란을 입법을 통하여 명확히 하고, 가정구성원인 노인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라 형사 처벌되는 범죄로서 가족구성원에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를 “가정폭력 범죄”로 명시하고자 함.

아울러 「노인복지법」과 유사한 형벌규정을 갖고 있는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범죄도 가정폭력범죄로 명시하여,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장애인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정폭력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(안 제2조제3호과목 및 하목 신설).
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3호파목을 거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파목 및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호 거목(중전의 파목) 중 “타목”을 “하목”으로 한다.

파. 「노인복지법」 제55조의2의 죄, 같은 법 제55조의3제1항제2호의 죄 및 같은 법 제55조의4제1호의 죄

하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86조제1항 및 제2항의 죄, 같은 조 제3항제3호의 죄, 같은 조 제4항제2호의 죄, 같은 조 제5항의 죄 및 같은 법 제87조제1호의 죄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가정폭력범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“가정폭력범죄”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.	3. ----- ----- -----.
가. ~ 타. (생 략)	가. ~ 타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<u>파. 「노인복지법」 제55조의 2의 죄, 같은 법 제55조의 3제1항제2호의 죄 및 같은 법 제55조의4제1호의 죄</u>
<신 설>	<u>하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86조 제1항 및 제2항의 죄, 같은 조 제3항제3호의 죄, 같은 조 제4항제2호의 죄, 같은 조 제5항의 죄 및 같은 법 제87조제1호의 죄</u>
<u>파.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</u> 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	<u>거. -----하목-----</u> ----- -----
4. ~ 8. (생 략)	4. ~ 8. (현행과 같음)